

제25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 월 10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경 권 구



여수시 조례 제2291호

붙임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291호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를 “무료 이용시간은 1시간으로”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영자전거 이용료(제14조제6호 관련)

구 분	구분	이용방법	결제수단
사용료	• 1년: 30,000원	휴대전화 공영자전거 어플 “여수랑” 설치 및 회원가입 후 이용료 결제	신용카드 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 6개월 : 18,000원		
	• 1개월: 5,000원		
	• 1시간: 무료 (단, 1시간 이내 반복 이용 가능)		
추가 사용료	☐ 1시간(기본 무료 이용시간) 초과 시 30분당 500원 부과 (일일 최대 3,000원) ☐ 대여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반납시 추가 요금 부과 (일일 최대 3,000원×일수)		

※ 전산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으로 반납 처리가 안 된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공영자전거의 운영·관리)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영자전거를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기본 <u>이용시간은 2시간으로</u> , 기본 이용시간 내 반납 후 재대여의 횟수 제한은 없다. 3. ~ 7. (생략)	제14조(공영자전거의 운영·관리) - ----- ----- -----. 1. (현행과 같음) 2. ----- -- <u>무료 이용시간은 1시간으로</u> ----- -----. 3. ~ 7. (현행과 같음)